

제3채무자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18층, 19층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성표



135-700

2060316 - 401558 ↓
(민사신청과 51(민사)단독)
2015-072-2581-506

장수경(Law)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 25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예정 기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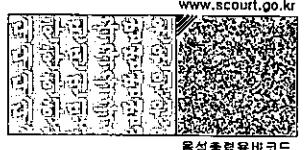
담당재판부 : 51(민사)단독

직통 전화 : 3271-1354, 담보취소(1361), 이의취소(1356)

팩스 :

e-mail :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판권증명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사건 2015카단25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취급지점 : 회생지원부)
송달장소 :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712호 (공덕동, 제일빌딩)(송달
영수인:법무사 권해춘, 오효순)
대표자 이사장 강진섭, 대리인 박창진
채무자 장수경 (590421-2094517)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48길 30, 201호 (쌍문동, 삼도빌라)
제3채무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110111-1492513)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18층, 19층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대표이사 박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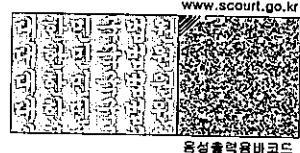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사전구상금



청구금액 금 7,900,000 원

이 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입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000-201502318091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9.

판 사 강 민 호



- ※ 1.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www.scourt.go.kr

< 별지 >

목 록

청구금액 금 7,900,000원정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와 제 3 채무자간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9월 11일신탁계약을
체결하고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동기소 2014년 9월 11일 접수 제 59029 호
(신탁원부 제 2014-537호)로써 제 3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바, 위 신탁
기간의 종료(만료) 또는 신탁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채무자가 제 3 채무자로부터
받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86-1 제 2 층 제 1 호

- 이 상 -



온라인판결문

정본입니다.

2015.06.09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 장호용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최 고 서

사 건 2015카단25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채 권 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채 무 자 장수경

제3채무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채권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최고의 신청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아래 사항을 진술하기 바라며, 첨부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15. 6. 9.

판 사 강 민 호



제3채무자 진술서

사건 2015카단25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채무자 장수경

제3채무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제3채무자는 위 사건의 가압류명령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제3채무자 _____(날인 또는 서명)

◇ 다음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가압류된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금	원(원금)
금	원(위 금원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

다. 기타 참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급의사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없을 경우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를 의미함)

예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금	원(원금)
금	원(위 금원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

다.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①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질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②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타 위 채권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제3채무자는 이 가압류 이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통합도산법상의 보전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도 이를 기재하고, 그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이름, 주소
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기재함)

◇ 유의사항 ◇

※ 이 양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시고,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하는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 237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사건에 대한 진술서 제출안내

이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으로 제3채무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사단, 재단 법인 등 포함)은 진술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부담으로 방문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 방법]

- ① 인터넷 검색 창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을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http://ecfs.scourt.go.kr>」을 입력합니다.
- ② 서류제출 영역에서 ‘조회서등 회신’을 선택하고, 아래의 회신서 종류, 소송 유형, 법원, 사건번호, 문서제출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 | |
|---|---|
| <input type="radio"/> 회신서 종류 : 제3채무자진술서 | <input type="radio"/> 소송유형 : 민사 |
| <input type="radio"/>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input type="radio"/> 사건번호 : 2015카단2581 |

- ③ 문서제출번호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문서와 함께 동봉된 주소안내문에 표시된 바코드 13자리 번호입니다.

제3채무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2 르네상스오피스텔 123호 권미복
	
463-828	
2096908 - 413516 1 (종부과 합의10부) 2013-071-70001-518	

- ③ 진술서 제출화면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미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전자제출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날인(또는 서명)된 진술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④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등록회원이 로그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의 사건 관리’에서 제출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